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5조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 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권고의 대상,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징계권고 대상) 징계권고는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 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3조(징계권고 기준) 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(이하 "보호위원회"라 한다)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 - 1. 고의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
 - 2. 위반행위가 법 제59조. 제60조 및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
 - 3. 위반행위가 법 제28조의6제1항, 제34조의2제1항 또는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같은 법 시행령 [별표1] 2. 가., [별표1의3] 2. 가., [별표1의5] 2. 가.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중 '매우 중 대한 위반행위'에 해당하는 경우
 - 4.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정보주체의 권리·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5. 보호위원회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구체적 행위태양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
 - 6. 위반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위원회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
- 7. 위반행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
- 8. 그 밖의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, 개인정보 침해의정도 및 피해 규모, 사업 규모 등 법 준수의 기대가능성, 과거 법 위반 이력, 추가 피해의 방지,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위반행위의 결과 제거를 위한 노력, 향후 동종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, 위반행위자의조사 협력 및 자진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고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.
- 제4조(징계권고 방법) ① 징계권고는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(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) 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하는 방법으로 한다.
 - ② 보호위원회는 책임이 있는 자의 특정 가능성, 위반행위의 중대성, 정보주체의 권리·이익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거나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 - ③ 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준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.
- 제5조(조사)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 [별표]

징계기준(제4조제2항 관련)

비위의 정도 및		비위의 정도가	비위의 정도가	
과실 여부	비위의 정	심하고 중과실	심하고 경과실	비위의 정
	도가 심하	이거나,비위의	이거나, 비위	도가 약하
	고 고의가	정도가 약하고	의 정도가 약	고 경과실
	있는 경우	고의가 있는	하고 중과실인	인 경우
비위의 유형		경우	경우	
1. 개인정보 무단 수집· 열람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	견책
2. 개인정보 무단 이용	파면-해임	해임-강등	정직	감봉-견책
3, 개인정보 유출	파면-해임	해임-강등	정직	감봉-견책
4. 개인정보 관리 소홀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	견책

※ 비고

- 1. 개인정보 고의 유출·부정 이용으로서 각종 범죄 악용 등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.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.
- 가.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
- 나.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
- 다.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·열람, 무단 이용, 유출한 경우
- 3.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,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, 비위행위가 미치는 영향, 수사 중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, 평소 행실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,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계 종류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.